■민족문화연구 제85호(2019.11.3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153-189.
http://doi.org/10.17948/kcs.2019..85.153

【특집2: 한국 문화의 정체성 연구】

고려후기 '전형적' 제후국 외교의례의 창출과 몽골 임팩트*

최종석(崔鍾奭)**

목 차

1. 머리말
2. 원 복속기: 몽골(원) 지방 아문 의례의 활용·변용
3. 고려말기: 명의 『蕃國儀注』를 활용한 외교의례 운용
4. 맺음말

국문초록

몽골 등장 이전에 외교의례는 황제의 조서와 칙서 등을 지니고 온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가 전부이다시피 하였고, 당시 고려는 황제국 지방 아문의 의례와 이질적이며 자체 제작한 의주에 의거해서 황제의 조서와 칙서 등을 맞이하였다. 또한, 당시의 외교의례는 고려 군주가 외교(대외) 현장에 한해 황제 제후(신하)의 위상을 구현하는 성격의 것이었고, 이와 맞물려 국내에서조차 신하의 위상을 구현하는 성격의 의례는 거행되지 않았다.

원 복속기에 들어서 외교의례는 전면적으로 전환되었다. 외교의례 변화의 계기는 크게 보아 두 갈래였다. 하나는 정동행성의 설치도 전에 몽골(원)이 복속된 '외국'인 고려를 대상으

* 이 연구는 한샘DBEW연구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동덕여대 국사학과 부교수.

로 일부의 지방 아문 의례를 적용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후기 정동행성의 설치 이후로 충렬왕이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하여 아직 도입되지 않은 몽골(원)의 외로아문 의례를 수용한 것이었다. 외교의례 변화의 계기는 상이했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원 복속기의 외교의례는 고려 군주가 '고려국왕'이자 정동행성 승상의 위상에서 몽골(원)의 지방 아문의 의례를 활용하면서도 그러한 위상에 걸맞게 변용하는 방향으로 수렴된 채 거행되었다.

명은 前代에 고려에서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각종 외로 아문 의례를 활용・실행한 일을, 蕃國인 고려가 지방 아문의 의례와 다를 바 없는 각종 외교의례를 거행하고 이와 맞물려 천자의 천하 지배가 번국 내에서도 구현된 것으로 전유・계승하여 번국 내에서 명(황제)을 대상으로 거행하는 의례들의 의주까지 직접 작성하였다.

고려 또한 전대에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각종 외로 아문 의례를 활용・변용해 온 일을 번국(제후국)이 행해야 하는 외교의례의 실천으로 전유하였을 것이다. 이에 고려는 명 측에 번국인 고려에서 명(황제)을 대상으로 거행하는 의례들의 의주를 요청하였고, 명은 이들 의주를 일괄하여 책자 형태로 만들어 고려에 하사하였다(『蕃國儀注』의 하사). 고려는 명이 하사한 『蕃國儀注』의 수록 의주들을 토대로 그것의 복제품과도 같은 외교의례(의주)를 작성하였고, 여기에 더해 『蕃國儀注』를 준용한 의주 작성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전대의 관행을 전유・계승하여 자체적으로 '迎大明無詔勅使儀'를 제작하였다.

그 결과 원 복속기는 물론이요 고려말기의 외교의례도 국내에서조차 황제 신하의 위상을 구현한다든지, 황제국 지방 관부의 황제를 대상으로 한 의례와 同調한다든지 하는 특징을 노정하게 되었다. 고려말기의 외교의례와 그 의주는 그 이후로도 이어져 사실상 대한제국 성립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고려말기의 외교의례는 원 복속기를 전유・계승한 데서, 원 복속기 이래 외교의례는 대한제국 성립 이전까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외교의례, 蕃國儀注, 정동행성, 고려, 몽골(원).

1. 머리말

고려말기의 외교의례와 그 의주는 『高麗史』 禮志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고려사』 예지에 수록된 '迎大明詔使儀', '迎大明賜勞使儀', '迎大明無詔勅使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 '進大明表箋儀' 등이 이에 해당한다.[1] 이들 각각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迎大明詔使儀'는 명(황제)이 보낸 詔使(詔書)를 맞이하는 의례와

1) '迎大明詔使儀', '迎大明賜勞使儀', '迎大明無詔勅使儀'는 『고려사』 권65 지19 예7 賓禮에,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와 '進大明表箋儀'는 『고려사』 권67 지21 예9 嘉禮에 수록되어 있다.

그 의주, '迎大明賜勞使儀'는 명(황제)이 보낸 賜勞使(禮物)를 맞이하는 의례와 그 의주, '迎大明無詔勅使儀'는 명이 보낸 咨文 등의 公牒을 지니고 온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와 그 의주,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는 元正, 冬至, 聖節 시에 명 황제를 대상으로 한 望闕禮와 그 의주, '進大明表箋儀'는 고려 군주가 표전을 작성하여 자국의 사신에게 건네는 과정에서 행하는 臣禮와 그 의주이다. 이들 의례는 공히 고려(국왕)가 명(황제)을 대상으로 신례를 구현하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고려말기의 이들 외교의례와 그 의주는 사실상 조선시대까지도 존속되었다. 『世宗實錄』 五禮와 『國朝五禮儀』에 수록된 황제(국)를 대상으로 한 외교의례는 '迎詔書儀', '迎勅書儀', '正至及聖節望闕行禮儀', '皇太子千秋節望宮行禮儀', '拜表儀'(拜箋附) 등인데,[2] '迎詔書儀'는 '迎大明詔使儀'와, '迎勅書儀'는 '迎大明賜勞使儀'와, '正至及聖節望闕行禮儀'·'皇太子千秋節望宮行禮儀'는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와, '拜表儀'(拜箋附)는 '進大明表箋儀'와 같은 종류의 것이다. 다만 '迎大明無詔勅使儀'에 상응하는 의례(의주)는 확인되지 않는다.[3] 의례 종류만의 존속이 아닌 게,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이들 외교의례는 의주 내용 면에서 『고려사』 예지의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고려사』 예지의 것에 비해 의주 내용이 훨씬 상세하고 보완적이긴 해도, 의례절차의 기본 구성뿐만 아니라 각 부분 내 세부 절차에서조차 다른 점은 없었다.[4] 마치 양자는 상세본과 요약본의 관계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외교의례는 애초에 명(황제)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긴 해도 丁丑下城 이후로는 명(황제) 대신 청(황제)을 대

2) '迎詔書儀', '迎勅書儀', '正至及聖節望闕行禮儀', '皇太子千秋節望宮行禮儀', '拜表儀'(拜箋附)는 『世宗實錄』 五禮 嘉禮儀式과 『國朝五禮儀』 卷3 嘉禮에 수록되어 있다.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에는 수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들 외에 황제(국)를 대상으로 한 외교의례로 '迎誥命儀'가 존재한다. 『세종실록』 권3 세종 1년 1월 신해 참조.

3) 조선시대에도 자문 등의 公牒을 받는 예식은 존재하였을 것이나 문서로 작성된 공식적인 의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태조실록』 권5 태조 3년 4월 계유 참조. 거꾸로 고려말기에는 고명을 맞이하는 예식의 의주가 확인되지 않지만 고려말기에도 그러한 예식 자체는 존재하였을 것이다. 『고려사』 권135 열전48 우왕 11년 9월; 『明太祖實錄』 卷174 洪武 18년 7월 갑술 참조.

4) 이 점은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의 '迎詔書儀'를 고려말기의 '迎大明詔使儀'와 비교한 연구에서 확인되는데, 여타 의례도 다르지 않다. 최종석, 「조선초기 迎詔禮 운영과 『蕃國儀注』」, 『역사와 담론』 제86집, 호서사학회, 2018a.

상으로 적용되었다. 곧 조선후기에도 '迎詔書儀', '迎勅書儀', '正至及聖節望闕行禮儀', '皇太子千秋節望宮行禮儀', '拜表儀'(拜箋附) 등의 의례는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의례의 의주 내용도 바뀌지 않았다.[5]

이처럼 고려말기의 외교의례와 그 의주는 사실상 조선말기까지, 정확히는 대한제국 성립 이전까지 지속되었다.[6]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고려말기 이래 황제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의례와 그 의주가 그 이전 시기의 것과는 큰 폭의 차이가 있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고려전기의 외교의례에 해당하는, 『고려사』 예지에 수록된 '迎北朝詔使儀', '迎北朝起復告勅使儀'[7]와 이질적이었다.[8]

---

5) 청과의 강화조약에 따르면, "聖節・正朝・冬至・中宮千秋・太子千秋 및 慶吊 등의 일이 있으면 모두 모름지기 예를 올리고, 大臣 및 內官에게 명하여 表文을 받들고 오게 하라. 바치는 표문과 箋文의 程式, 짐이 詔勅을 내리거나 혹 일이 있어 사신을 보내 유시를 전달할 경우에 그대와 사신이 相見禮를 하는 것, 혹 그대의 陪臣이 謁見하는 것 및 영접하고 전송하며 사신을 대접하는 예 등을 명나라의 舊例와 다름이 없도록 하라"고 하여, 청 황제에게 稱臣한 이후로도 외교의례는 달라지지 않았다.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1월 무진. 이에 관한 청 측 기록은 『淸太宗實錄』 卷33 崇德 2년 정월 무진 참조. 실제로 각각 영조대와 정조대에 편찬된 오례서인 『國朝續五禮儀』와 『春官通考』에 수록된 외교의례는 그 의주가 『국조오례의』의 것과 동일하였다.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외교의례와 그 의주는 조선말기까지 그대로 존속・기능한 것이었다. 즉 영조대에 편찬된 『국조속오례의』는 『국조오례의』에서 변화가 있거나 새롭게 추가된 전례를 정리한 續編에 해당하는데, 각종 외교의례는 의주 상에 변개가 없어 아예 여기에 수록되지 않았다. 정조대 편찬된 『춘관통고』는 『국조오례의』와 『국조속오례의』 등의 국가전례서에 수록된 儀註를 종합하고 각 典禮의 역대 사실을 정리한 작업 결과물이었는데, 권46에 기재된 '正至及聖節望闕行禮儀', '皇太子千秋節望宮行禮儀', '迎詔書儀', '迎勅書儀', '拜表儀'(拜箋附)의 제목에는 국조오례의의 의식대로 한다는 의미인 '原儀仍舊'가 부기되어 있다. 의주 면에서 변화가 없던 것이다. 『國朝續五禮儀』와 『春官通考』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들이 참고된다. 김지영, 「18세기 후반 國家典禮의 정비와 『春官通考』」, 『韓國學報』 제114집, 일지사, 2004; 김문식, 「조선시대 國家典禮書의 편찬 양상」, 『장서각』 제21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송지원, 「영조대 儀禮 정비와 『國朝續五禮儀』 편찬」, 『한국문화』 제50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정조대 의례 정비와 『春官通考』 편찬」, 『규장각』 제38집,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6) 『大韓禮典』은 대한제국의 건립 후 황제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가전례를 실행하기 위해 편찬된 국가전례서인데, 여기에는 황제를 대상으로 거행해온 의례들인 '迎詔書儀', '迎勅書儀', '正至及聖節望闕行禮儀', '皇太子千秋節望宮行禮儀', '拜表儀' 등의 외교의례가 일괄 삭제・제외되었다. 『대한예전』에 관해서는 김문식, 「장지연이 편찬한 『대한예전』」, 『문헌과 해석』 제35호, 문헌과해석사, 2006; 임민혁, 「대한제국기 『大韓禮典』의 편찬과 황제국 의례」, 『역사와 실학』 제34집, 역사실학회, 2007 참조.

7) 『고려사』 권65 지19 예7 빈례 迎北朝詔使儀; 迎北朝起復告勅使儀. 이들 의례에서 北朝는 거란을 지칭한다. 김성규, 「고려 외교에서 의례(儀禮)와 국왕의 자세」, 『역사와 현실』 제94호, 한국역사연구회, 2014. 금은 사신 왕래 등을 요가 했던 例대로 행한 데서, 이들 의례가 고려와 금 사이에도 활용되었을 것은 비교적 분명하다. 『고려사』 권15 세가15 인종 4년 9월 신미 참조.

8) 『고려도경』에 수록된 송 황제의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인 受詔 의례와도 이질적이었다. 『高麗圖經』

고려전기의 외교의례는 황제의 조서와 칙서 등을 지니고 온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가 전부일 정도여서, 당시에는 望闕禮와 拜表禮처럼 고려 군주가 황제국에서 온 인사(사신)의 視線이 없는 상황에서조차 자국 내에서 황제를 대상으로 臣禮를 거행하는 의례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9] 달리 말해, 고려말기에는 고려전기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와 '進大明表箋儀'가 실행된 것이다.

'迎大明詔使儀', '迎大明賜勞使儀', '迎大明無詔勅使儀'는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여서 '迎北朝詔使儀', '迎北朝起復告勅使儀'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의주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양자는 껍데기만 같고 내용물이 완전히 다르다고까지 할 수 있다. 가령 '迎大明詔使儀'는 똑같이 조사를 맞이하는 의례인 '迎北朝詔使儀'와 이질적이다. '迎北朝詔使儀'에서는 고려 군주가 궁성 안에서 詔使를 맞이하였고[10] 선 채로 사신으로부터 조서를 건네받았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조서의 낭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비해, '迎大明詔使儀'에서는 국왕이 직접 국문(도성문) 밖에까지 나가서 詔使를 맞이하였고 무릎을 꿇은 채 낭독되는 조서 내용을 들어야 했다.[11]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고려말기의 외교의례와 그 의주가 사실상 조선말기까지 지속된 데 비해 고려전기의 외교의례와는 단절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즉 고려말기 이래 외교의례는 고려전기의 외교의례와 이질적이자 단절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말기 이래 외교의례는 본문에서 상술하듯 다음과 같은 특징 또는 성격을 노정한다. 간략히 소개하면 이렇다.

우선, 고려전기의 외교의례가 고려 군주의 외교(대외) 현장에서 황제 제후

卷25 受詔.

9) 이에 관해서는 최종석, 「고려시대 朝賀儀 의례 구조의 변동과 국가 위상」, 『한국문화』 제51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a; 「고려후기 拜表禮의 창출·존속과 몽골 임팩트」, 『한국문화』 제86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9 참조.

10) '迎北朝詔使儀'는 고려 군주가 조사를 어디에서 맞이하는지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고려사』 세가 기록에 따르면,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궁성 안에서 조사를 맞이하였다. 정동훈, 「고려시대 사신 영접 의례의 변동과 국가 위상」, 『역사와 현실』 제98호, 한국역사연구회, 2015, 116-117면 참조.

11) 정동훈, 앞의 글, 2015. 이외에도 여러 의절에서 두 의주는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신하)의 위상을 구현하는 성격의 것인데 비해, 고려말기 이래 외교의례는 외교(대외) 무대에 한정되지 않고 국내에서조차 신하의 위상을 구현하는 성격의 것이었다. 遙賀禮(=望闕禮)를 사례로 하여 이 차이를 보충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正朝, 聖節 등의 명절에 황제국에서는 신하들이 군신 의례인 朝賀儀禮에 참석하여 황제에게 경하를 표한다. 고려전기에 고려 군주는 사자를 보내 자신을 대신하여 조하의례에 참석하여 황제를 상대로 臣禮를 구현하도록 하는데, 정작 자신은 황제국에서 조하의례가 거행되는 날에 황제에게 경하를 표하는 식의 어떠한 신례도 행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고려말기에 고려 군주는 사신을 보내 황제(국)의 명절을 경하하도록 하는 것과 별도로 명에서 거행되는 조하의례와 연동하여 자국 내에서 자신이 직접 신하들을 이끌고 臣禮인 망궐례를 거행하였다. 이것은 명의 지방 관부의 장관이 조정에서의 조하의례에 맞춰 망궐례를 거행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12] 국내에서조차 고려 군주의 황제 신하로서의 위상이 구현된 셈인데, 고려말기의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는 바로 이러한 망궐례(의주)에 해당한다.[13] 재삼 언급하듯이 이러한 성격의 망궐례는 질적 변화 없이 조선말기까지 지속적으로 거행되었다.

둘째, 고려전기와 달리 고려말기 이래 외교의례는 명・청 지방 관부의 황제를 대상으로 한 의례와 同調的이었다.[14] 가령 고려말기 이래 망궐례・배표례는 의례 구조 등의 면에서 명・청 지방 관부에서 거행하는 망궐례・배표례와 동질적 성격의 것인데 비해, 고려전기에는 황제국의 지방 관부와 달리 아예 이들 의례 자체가 거행되지 않았다.[15] 영조례의 경우 고려말기 이래 영조례는 명・청 지방 관부에서 거행된 영조례와 동조적인데[16] 비해, 고려전

12) 최종석, 앞의 글, 2010a 참조.
13) 고려말기에는 국왕이 자국의 사신에게 표문을 건네는 과정에서 황제를 대상으로 해서 신례를 거행하였지만, 고려전기에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신례도 행하지 않았다. 최종석, 앞의 글, 2019. 고려전기에는 보이지 않던 배표례의 등장은 망궐례의 출현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
14) 의주에 지방 관부와 번국의 차이가 반영되긴 했지만, 의례의 기본 구조나 성격은 동일하였다고 할 수 있다.
15) 최종석, 앞의 글, 2010a; 앞의 글, 2019 참조.
16) 정동훈, 앞의 글, 2015 참조.

기의 영조례(迎北朝詔使儀)는 '外路迎拜赦詔'[17]와 같은 황제국 지방에서의 영조례와 이질적이고도 별개로 운영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고려말기 이래 외교의례가 등장한 과정과 맥락을 탐색하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고려전기와 이질적이자 단절적인 고려말기 외교의례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출현하게 되었는지, 고려말기 외교의례의 이질적인 특징은 무엇을 동인으로 하여 성립되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특히 단절의 계기로 원 복속기에서의 변화를 주목하여 원 복속기 외교의례 측면에서의 변화가 고려말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轉有・계승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18]

그간 조선과 명・청의 외교 관계는 전형적인 조공 책봉 관계로 이해되어 왔다.[19]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고려말기 이래 외교의례는 전형적인 조공 책봉 관계를 구성하는 전형적인 외교의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20] 전형적인 조공 책봉 관계의 설정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성립되는 초창기에 전형적인 관계의 모델이나 원형이 존재하였고 그것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형적 모습으로 성장하는 기원론적 접근법, 목적론적 역사관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필자는 종래의 이해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형적인 외교의례로 이해되곤 한 고려말기 이래 외교의례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이 원 복속기에 우발적으로 변질되고 新出한 외교의례로부터 전유・계승의 메커니즘을 통해 성립되었음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21] 필자가 보기에 고려말기 이래 외교의례가 전형・전통으로 호명된 것은 홉스봄이 언급한 근대의 발명품에 해당한다고[22] 할 수 있다.

---

17) '外路迎拜赦詔'는 금의 지방 관부에서의 영조례이다. 『大金集禮』 卷24 外路迎拜赦詔.
18) 이 과정에서 고려말기 이래 외교의례의 특징 또는 성격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19) 전해종, 『韓中關係史硏究』, 일조각, 1970.
20) 전형적인 제후국 외교의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1) 필자는 배표례를 매개로 하여 '고려 군주가 정동행성 승상이기도 한 데서 비롯되었을 '돌출적' 의례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조선과 명・청 사이의 소위 '전형적' 조공 책봉 관계를 구성하는 제후(국)의 당위적 의례로 재탄생하게 되었는지를 규명한' 바 있다. 최종석, 앞의 글, 2019. 여기서는 외교의례 전반으로 확대하여 이러한 시도를 해 보려 한다.
22) 에릭 홉스봄, 장문석・박지향 공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2. 원 복속기: 몽골(원) 지방 아문 의례의 활용·변용

1) 변화상

『고려사』 예지에는 원 복속기에 고려(국왕)가 몽골(원) 황제를 대상으로 거행한 의례의 의주가 보이지 않는다. 고려(국왕)는 몽골(원) 황제를 대상으로 각종 의례를 거행하였지만, 후술하듯 문서 형태로 된 공식 의주를 작성하진 않은 듯싶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원 복속기에는 '迎大明詔使儀', '迎大明賜勞使儀', '迎大明無詔勅使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 '進大明表箋儀'에 상응하는 의주가 작성되진 않았어도 고려말기에 거행된 각종 외교의례에 부합하는 의례들이 실행되었으며 예식절차도 고려말기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달리 말해, 원 복속기에 거행된 의례는 고려전기와 단절적이자 이질적인 데 반해 고려말기 외교의례의 先驅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원 복속기에 들어서 그전에는 행해지지 않던 망궐례(요하례)와 배표례가 등장하였고, 종래의 영조례는 고려말기의 것과 같은 성질의 의례로 탈바꿈하였다.[23] 이하에서는 원 복속기 들어서 외교의례가 변화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다.

요하례는 늦어도 원종 14년(1273) 8월에는 시행되었다.[24] 이때 요하례는 몽골(원) 조정에서 거행되는 성절 조하의례와 연동하여 원종이 자신의 신하들을 이끌고 성절을 하례하는 것이었다. 이 이후로 요하례는 正朝와 성절 시 몽골(원) 조정의 조하의례와 연동하여 정례적으로 거행되었을 것이다.[25]

고려전기에 조하의례는 정조, 동지, 군주 탄일 시에 고려 군주가 자신의 신하들로부터 경하를 받는 예식(受朝賀 예식)으로만 치러졌다. 그러다 원 복속기 들어서 조하의례는 고려 군주가 자신의 신하들로부터 경하를 받는 예식

23) 이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들이 참고된다. 최종석, 앞의 글, 2010a; 앞의 글, 2019; 정동훈, 앞의 글, 2015.

24) 『고려사절요』 권19 원종 14년 8월. "王率群臣, 賀聖節, 達魯花赤率其屬立於右, 上將軍康允紹亦率其黨, 胡服直入, 自比客使, 見王不拜, 王怒而不能制."

25) 원은 몽골의 관습에 따라 동지에는 조하 의례를 거행하지 않았다. 그러했기에 동지에는 요하례가 행해지지 않았다.

(受朝賀 예식) 외에도 고려 군주가 황제에게 경하하는 요하례를 구성 요소로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조 시의 조하의례는 요하례와 수조하 예식의 조합으로, 황제의 탄일인 성절 시의 조하의례는 요하례만으로, 동지와 군주 탄일 시의 조하의례는 수조하 예식만으로 거행되었다.[26] 이러한 식의 조하례 운영은 요하례가 조하의례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된 데서 비롯된 것인데, 동아시아 전체를 상정하더라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27]

요하례와 짝을 이루는 배표례도[28] 원 복속기에 등장하였다. 배표례는 충렬왕 28년(1302) 8월 갑자일에 처음으로 시행되었고[29] 그 이후로 일반적으로 거행되었다. 표문은 고려시대 내내 황제국에 올려졌지만,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에 拜表禮가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고려 군주는 작성된 표문을 자신의 신하인 使者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拜禮를 행하고 꿇어앉은 채 표문을 사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황제를 대상으로 한 臣禮를 행하였다. 이 조치 이전에 중국 밖의 제후국 군주가 자국의 사자에게 표문을 건네는 과정에서 배표례를 거행한 사례는 동아시아의 지평에서 보더라도 존재하지 않았다.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 이전에 고려 군주는 작성된 표문을 황제국에 파견되는 자신의 신하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배표례 없이 건넸다. 구체적으로는 국왕이 아닌 실무자가 사자에게 표문을 전달하였을 것이다.[30]

영조례는 원종대에 이미 탈바꿈하였다. 개경으로의 환도 직후인 원종 11년 12월 을묘에 원종은 직접 교외에까지 나가 詔書(詔使)를 맞이하였다.[31] 충렬왕 즉위 직후를 제외하고는 이 이후로도 줄곧 고려 군주는 몸소 교외인 宣義

---

26) 최종석, 앞의 글, 2010a 참조.

27) 이 이전에는 중국에서건, 조하의례 제도를 수용한 그 주변국에서건 조하의례는 수조하 예식만으로 치러졌다.

28) 정조, 성절 등의 명절을 맞아 황제국에서는 신하들이 군신 의례인 조하의례에 참석하여 황제에게 경하를 표하고 황제에게 축하의 표문을 바친다. 고려의 使者 역시 군주를 대행하여 황제(국)의 명절을 축하하기 위해 표문을 올리고 조하의례에도 참석한다.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국내에 머무는 군주가 거행하는 臣禮가 배표례와 요하례였다.

29) 『고려사』 권67 지21 예9 가례 충렬왕 28년 8월 갑자. "百官備禮儀, 送于迎賓館, 拜表之禮始此."

30) 이상 배표례에 관한 서술은 최종석, 앞의 글, 2019를 토대로 했다.

31) 『고려사』 권26 세가 원종 11년 12월 을묘. "世子謀與蒙古斷事官不花孟祺等來, 王出迎于郊, 詔曰, '頃承世嫡來展壽儀, 雖歲事之有常, 見敬心之無替, 宜申寵錫用答勤誠, 今賜卿西錦一段及曆日'."

門(羅城 서문) 밖에까지 나가서 조서(조사)를 맞이하였다.[32] 고려전기에 군주가 궁성 안에서 詔使를 맞이하였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원 복속기에는 '迎北朝詔使儀', '迎大明詔使儀'와 같은 종류의, 고려가 작성한 영조례 의주가 부재한 데다가 『고려사』에는 고려 군주의 교외에서 조서(조사) 영접 및 조서 내용만이 기록되었을 따름이어서, 영조례 예식절차 변화의 구체상을 포착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원 복속기 들어서 고려 군주가 직접 교외에까지 나가 조사를 영접하게 된 현상은 영조례 예식절차 면에서도 큰 폭의 변화가 있었을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

원 복속기에는 요하례, 배표례 외에도 고려 군주의 황제를 대상으로 한 군신 의례로 새로이 등장한 것이 더 있었다. 이들은 요하례, 배표례와는 달리 고려말기 이후로까지 계승되지는 않았다. 충렬왕 2년(1276) 1월 을해일에 충렬왕은 세조 쿠빌라이의 聖甲日(本命日)을 맞아 普濟寺에 法席을 설치하고는 황제의 만수무강을 비는 예식을 거행하였다. 본명일 예식은 이 이후로 지속된 듯하다.[33] 이외에도 충렬왕 27년(1301) 1월 병진일(보름)에 충렬왕은 백관을 거느리고 妙蓮寺에 행차하여 황제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34] 후술하듯이 예식 또한 이때 이후로 정기적으로 거행되었을 것이다.

2) 변화의 맥락

원 복속기 들어서 외교의례 측면에서 이러한 대대적인 변화는 왜 그리고 어떠한 계기를 통해 발생한 것일까? 변화 발생의 계기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긴 해도 의례마다 소폭의 차이가 있어 개별적인 검토 작업이 필요할 듯싶다.

변화의 계기가 상대적으로 뚜렷한 영조례 사례를 먼저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다음 기록은 영조례 변화가 무엇을 계기로 이루어졌는지 잘 보여준다.

---

32) 정동훈, 앞의 글, 2015 참조.

33)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2년 1월 을해. "設法席于普濟寺, 爲帝祝釐. 每値聖甲日, 行之, 時謂之乙亥法席."

34) 『고려사』 권32 세가32 충렬왕 27년 1월 병진. "王率百官, 幸妙蓮寺, 爲皇帝祝釐. 諸路行省以下官, 皆以正月朔望, 行香祝釐, 盖元朝之禮也."

> 왕은 詔使가 온다는 보고를 받고 宰樞・侍臣들을 거느리고 時服 차림으로 서문 밖에서 맞이하였다. 국왕은 앞서 元 공주와 혼인하였으므로, 비록 조사라도 일찍이 성 밖까지 나가 맞이한 적이 없었다. 舌人 金台가 원에 갔을 때 省官이 이것을 말하며 이르기를, "駙馬王이 조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선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왕은 외국의 임금(外國之主)이시니, 조서가 도착하면 반드시 영접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때에 이르러 맞이하게 되었다.35)

충렬왕 원년(1275) 5월 갑술 당시 충렬왕은 西門, 곧 선의문 밖에서 조사(조서)를 맞이하였는데, 이것은 충렬왕이 즉위한 이후 교외에까지 나가 조서를 영접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충렬왕은 즉위 후 황제의 부마임을 내세워 도성 밖에서 조사를 맞이하지(出城而迎) 않았으나, 이 결정은 몽골(원)에 의해 제지되고 말았다. 몽골(원)은 충렬왕이 '外國之主'이기에 도성 밖에서 조사를 맞이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충렬왕은 이를 수용하여 충렬왕 원년 5월 갑술일에 교외에서 조사를 맞이하였다. 이 이후로 고려 군주는 직접 교외에까지 나가 조사를 영접해야 했다.

위 기록에 따르면, 원 복속기 들어서 고려 군주가 직접 교외에까지 나가 조사를 영접하게 된 일은, 몽골(원)이 '外國之主'는 도성 밖에서 조사를 맞이해야 한다고 보아 이를 관철한 데서였다. 기존 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36) 몽골은 복속한 '外國'을 대상으로 外路 衙門에서 詔書・赦書를 迎拜하는 의례(外路迎拜詔赦)를 적용하여, 지방 아문의 班首가 僚屬 등을 이끌고 廓外에까지 나가 詔書・赦書를 迎接하듯이37) '外國之主'도 자신의 신하들을 이끌고 도성 밖에까지 나와 조서를 맞이하도록 하였다.

몽골(원)은 金의 '外路迎拜赦詔'를 습용하여 '外路迎拜詔赦'를 마련하였다.38)

---

35) 『고려사』 권65 지19 예7 빈례 충렬왕 원년 5월 갑술. "王聞詔使來, 率宰樞侍臣, 時服迎于西門外. 王旣尙公主, 雖詔使, 未嘗出城而迎. 舌人金台如元, 省官語之曰, '駙馬王不迎詔使, 不爲無例. 然王是外國之主也, 詔書至, 不可不迎.' 至是迎之."

36) 정동훈, 앞의 글, 2015.

37) 『大元聖政國朝典章』 卷28 禮部1 禮制1 迎接 迎接合行禮數. "一, 外路迎拜詔赦. 送詔赦官到隨路, 先遣人報, 班首即率僚屬吏從人等, 備儀從音樂香輿, 詣廓外迎接. (…)"

38) 舩田善之, 「元代の命令文書の開讀について」, 『東洋史研究』 第63卷 4號, 東洋史研究会, 2005. 몽골(원)의 '外路迎拜詔赦' 마련은 지원 8년(1271)에 이루어졌다. 『元史』 卷7 世祖本紀4 至元 8년 11월 을해; 『大元聖政國朝典章』 卷28 禮部1 禮制1 迎接 迎接合行禮數 참조.

지방 아문의 班首가 요속 등을 이끌고 廓外에서 詔書·赦書를 迎接토록 한 일도 『大金集禮』 '外路迎拜赦詔'를 토대로 해서였을 것이다.[39] 그런데 몽골(원)은 금과 달리 外國인 고려에도 외로아문의 의례를 적용하였다.

금은 外路의 장관이 '外路迎拜赦詔'에 의거하여 5리 밖에까지 나와 조사를 맞이하도록 한 것과 달리, 고려의 군주를 대상으로 해서는 5리 밖에까지 나와 조사를 맞이하도록 하지 않았다. 금은 요가 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고려가 스스로 마련한 예식절차에 따라 영조례를 거행하도록 했다. 더 정확하게는, 금은 조사를 맞이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여타의 예식절차도 '外路迎拜赦詔'와 이질적인, 고려가 마련한 '迎北朝詔使儀'에 따라 영조례를 거행하도록 했다.[40]

금이 영조례 운영에서 제후국과 지방 아문을 별도로 한 것과 달리, 몽골(원)은 금의 '外路迎拜赦詔'를 습용하면서도 금과 달리 外國인 고려에도 외로아문의 의례를 적용하였다.[41] 금과 몽골(원) 가운데 예외적인 존재는 몽골(원)인 게, 몽골(원) 이전의 중국 왕조도 금과 같은 방식으로 영조례를 운영하였다. 몽골(원)은 유별나게도 지방 관부에서 詔書·赦書를 迎拜하는 의례를 외국에까지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몽골 변수로 말미암아 원 복속기 들어서 영조례 예식절차의 변개는 몽골 등장 이전까지는 별도이면서 이질적으로 운영되어온 '迎北朝詔使儀'(고려)와 '外路迎拜赦詔'(금)의 차이만큼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迎北朝詔使儀'(고려)에서 이와 이질적인 '外路迎拜赦詔'(금)와 같은 것, 즉 몽골(원)의 外路迎拜詔赦로 변모하는 식으로 말이다.

요하례도 영조례와 마찬가지로 정조, 성절 등 황제(국)의 명절 시에 복속된 외국인 고려가 지방에서와 다름없이 황제를 대상으로 遙賀를 행해야 했던 데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아래의 기록을 통해 이 점을 엿볼 수 있다.

---

39) 『大金集禮』 卷24 外路迎拜赦詔. "尚書省差官送赦書, 到京府節鎭, 先遣人報, 長官即率僚屬吏從人等, 備旗幟音樂綵輿香輿, 詣五里以來迎, 接見送赦書官. (…)"

40) 고려의 처지에서 보면 스스로가 만든 예식절차에 따라 금의 조사(조서)를 맞이한 것이 된다.

41) '外路迎拜詔赦'는 지원 8년(1271)에 마련되었다. 그런데 몽골(원)이 영조례 의주를 제정하기도 전에, 원종은 직접 교외에 나가 조서(조사)를 맞이한 바가 있다. 『고려사』 권26 세가 원종 11년 12월 을묘 참조. 이 현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몽골(원)은 자체적으로 '外路迎拜詔赦'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지방 관부에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절차로 金의 '外路迎拜赦詔'를 활용하였고 이를 외국인 고려에까지 적용하였을 것이다.

> 왕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聖節을 하례하였다. 達魯花赤이 자신의 僚屬을 거느리고 오른쪽에 섰다. 上將軍 康允紹 또한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胡服 차림으로 곧장 들어왔는데, 스스로 客使를 모방하여 왕을 보고도 절하지 않았다. 왕이 분노하였으나 제어할 수가 없었다.[42]

위 기록에 따르면, 고려에 주재하는 다루가치는 황제의 성절을 맞아 僚屬을 이끌고 遙賀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원종도 자신의 신하들을 이끌고 황제의 聖節을 경하하였다. 관련 기록이 없어 정확한 전후 사정을 알 순 없지만, 고려 군주가 요하례를 거행하기에 고려에 주재하는 다루가치(이를 포함한 몽골 관원)도 이에 동참하였다기보다는, 고려에 주재한 몽골 관원이 자국 군주(황제)의 명절을 맞아 요하례를 거행하거나 거행해야 한 상황에서 '外國之主'도 열외가 아니어야 하는 데서, 위 기록에서와 같은 장면이 연출되었을 것이다.

요하례는 영조례의 경우와 다른 게 몽골(원) 등장 이전까지 중국 밖의 국가(제후국)에서 중국 황제를 대상으로 이 의례가 시행된 바가 없었다. 중국 밖의 제후국에서 중국 황제를 대상으로 요하례를 거행해야 한다고 하는 식의 감각은 중국과 그 주변국에 공히 존재하지 않았다. 원 복속기 들어서 요하례가 시행된 것은 제후국이 황제를 대상으로 마땅히 거행해야 하는 의례를 수용·시행하는 차원에서의 일이 아니었다. 당시 고려에 체류하는 몽골(원) 관원의 요하례 거행이 '外國之主'인 고려 군주의 요하례 거행을 견인하였을 것이다. 즉 고려 군주는 자국 내에서 거행되는 황제를 대상으로 한 요하례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몽골(원) 입장에서 보자면, 요하례에서도 영조례의 경우와 같이 복속된 '외국'인 고려를 대상으로 지방 아문의 의례(외문 아문에서의 '拜賀行禮')[43]를 적용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을 것이다.[44]

배표례 시행의 계기는 大局的 견지에서는 영조례, 요하례 등과 동일·유사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몽골(원)은 사전에 명확한 계

---

42) 『고려사절요』 권19 원종 14년 8월. "王率群臣, 賀聖節, 達魯花赤率其屬立於右, 上將軍康允紹亦率其黨, 胡服直入, 自比客使, 見王不拜, 王怒而不能制."

43) 『大元聖政國朝典章』 卷28 禮部1 禮制1 朝賀 慶賀.

44) 충렬왕 2년(1276) 1월 을해일에 시작된 성갑일(본명일) 예식은 영조례, 요하례와 동일 혹은 유사한 계기에서 거행되었을 것으로 예상하나, 관련 자료가 없어 더 이상의 검토는 어렵다.

획을 갖고 지방 아문에서 황제를 대상으로 거행하는 각종 의례를 일괄적으로 '외국'인 고려에까지 적용하려 하지는 않았다. 앞서 본 원종대 종반과 충렬왕대 초반에 걸친 외교의례 면에서의 큰 변화는 다소 맹목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의 일이었다. 그래서인지 요하례와 짝을 이루는 배표례는 요하례보다 꽤 뒤늦게 시행되었다. 배표례 시행의 계기도 요하례와 다소 상이하였음은 물론이다.

배표례의 시행은 (후기)정동행성의 설치와 무관하지 않다.[45] 후기 정동행성으로도 불리는 충렬왕 13년(1287) 이후로의 정동행성은 충렬왕 6년(1280) 이후 몽골(원)의 일본원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軍前行省)으로서 斷續的으로 존재하곤 한 기왕의 정동행성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황제(카안)를 정점으로 하는 지방행정체계에 포함되어 있었다.[46] 고려 군주는 충렬왕 6년에 정동행성의 丞相職에 임명되고 나서는 이를 당연직으로 겸하였고 그리하여 충렬왕 13년(1287) 이후로는 지방행정 기구의 장관이기도 하였다. 『大元聖政國朝典章』에 따르면, 元日, 聖節 등의 명절에 5품 이상의 長官은 모두 慶賀의 표문을 올려야 하는데,[47] 정동행성 승상은 표문을 올리는 5품 이상 관부의 장관에 해당하였다. 충렬왕 14년(1288)부터 충렬왕 32년(1306)까지 정동행성이 고려(군주)의 進賀使 파견과 별도로 진하사를 파견한 것은[48]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당시 충렬왕은 정동행성 승상이라는 몽골(원)의 5품 이상 장관의 자격에서 賀表를 작성하여 사자를 통해 황제(카안)에게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몽골(원)의 5품 이상 외로아문의 長官과 마찬가지로 『大元聖政國朝典章』에 수록된 '元日外路拜表儀'[49]에 의거하여 배표례를 거행하였을 것이다. 충렬왕 14년 이후로 한동안 충렬왕은 정동행성 승상으로서 표문을 올린 때에만 배표례를 거행하였을 것이고, '고려국왕'으로서 표문을 올린 시에는 구래의 방식대로 배표례 없이 사자에게 이를 건넸을 것이다. '고려국왕' 차원에서의 배표례 시행은

45) 이하 배표례에 관한 서술은 최종석, 앞의 글, 2019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46) 北村秀人, 「高麗に於ける征東行省について」, 『朝鮮學報』 第32輯, 朝鮮學會, 1964; 장동익, 「征東行省의 硏究」, 『동방학지』 제67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0 참조.
47) 『大元聖政國朝典章』 卷28 禮部1 禮制1 進表 表章五品官進賀.
48) 정동행성 차원의 진하사 파견에 관해서는 이명미,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 혜안, 2016, 128-129면 참조.
49) 『大元聖政國朝典章』 卷28 禮部1 禮制1 迎接 迎接合行禮數.

충렬왕 28년(1302)에야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재차 언급하듯, '고려국왕'으로서 표문을 올리는 시에도 배표례를 거행한 것은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 이후부터였다. 그때 이후로 충렬왕은 이전처럼 '고려국왕'과 정동행성 승상의 자격에서 각각 황제에게 진하표문을 올리면서도 이전과 달리 모두 배표례를 행하였다. 그러다 충렬왕 32년(1306) 7월 기묘일에 정동행성이 성절을 경하하기 위한 진하사를 보내는[50] 것을 끝으로 정동행성이 별도로 사자를 보내 표문을 올리는 일은 소멸하였다. 이후로 고려(군주)만이 진하사를 파견하여 표문을 올렸고 이 과정에서 배표례가 거행되었음은 물론이다.

배표례의 변화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충렬왕 28년 고려(군주) 차원의 배표례 始行은 정동행성 차원의 배표례 거행에 의해서 견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충렬왕이 (외신)제후인 '고려국왕'이면서 동시에 지방 관부의 장관인 정동행성 승상이기도 한 '미증유'의 상황에서, 그리고 동일인을 각기 다른 명의로 한 표문을 별도로 몽골(원)에 보내는 '독특한' 조건 속에서, 정동행성 승상의 위상은 한 몸에서 공존하는 또 다른 위상인 '고려국왕'이 배표례를 거행하도록 견인하였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배표례 시행은 그 무렵 두드러진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한 元制(禮) 수용의 흐름과도 무관치 않다. 충렬왕 28년의 배표례 始行은 후대의 시각에서 보자면 제후국이 황제를 대상으로 거행해야 할 의례를 수용·시행한 일로 비칠 수 있으나, 몽골(원) 등장 이전에는 중국 밖의 제후국이 자국의 사자에게 표문을 건네는 과정에서 배표례를 거행한다고 하는 감각이 황제국과 제후국 어느 편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충렬왕 28년의 조치는 중국 밖의 제후국이 자국의 사자에게 표문을 건네는 과정에서 배표례를 거행한 첫 사례에 해당하였다. 이 조치는 충렬왕이 정동행성 승상이기도 한 조건에서 그 무렵 두드러진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한 元制(禮) 수용 흐름의 일환으로 표문을 올리는 시에도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외로아문의 의

50) 『고려사』 권32 세가32 충렬왕 32년 7월 기묘.

례를 수용하여 고려(군주) 방면으로까지 확장하고자 한 차원에서였을 것이지, 존재하지도 않았을 제후국(번국) 버전의 배표례를 수용・실행하고자 한 데서 구현된 것은 아니었다.

배표례는 영조례, 요하례와 달리 충렬왕의 자발적인 판단・의지에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조례의 변모와 요하례의 출현은 정동행성이 설치도 되기 전에 몽골(원)이 '외국'에다가 지방 아문의 의례를 적용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배표례 始行은 충렬왕의 의지・의도가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즉 이 무렵 충렬왕은 충선왕 측과 왕위 분쟁을 벌이면서 몽골(원) 측의 지지가 필요하였고 또한 국내 신료들에게 자신과 몽골(원) 측의 연계를 강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었기에, 정동행성 승상을 부각하면서 몽골(원) 외로아문 의례의 수용 차원에서 이 의례를 始行하였을 것이다.

배표례 始行에 1년 앞서 시작된, 정월 보름에 황제를 위한 '祝釐' 또한 배표례와 마찬가지로 정동행성 승상을 매개로 한 외로아문 의례의 수용이라 할 수 있다. 이 예식 실행의 기사에 부가된 "각 路의 行省 以下官은 모두 정월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하고 복을 비는데, 이것은 대개 원의 儀禮이다"[51]라고 한 언급은 이 점을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충렬왕은 정동행성 승상으로서 여타 행성관과 다름없이 이 예식을 거행하였을 것이다. 이 예식의 실행은 몽골(원)의 강요에서가 아니라 충렬왕이 정동행성 승상의 위상을 한층 부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현실화되었을 것이다.

3) 수렴과 귀결

이처럼 원 복속기 들어서 외교의례 측면에서 변화 발생의 계기는 두 갈래였다. 하나는 정동행성이 설치도 되기 전에 몽골(원)이 복속된 '외국'인 고려를 대상으로 지방 아문의 의례를 적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충렬왕이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하여 외로아문의 의례를 수용한 것이다. 변화 발생의 계

51) 『고려사』 권32 세가32 충렬왕 5년 1월 신축. "諸路行省以下官, 皆以正月朔望, 行香祝釐, 盖元朝之禮也."

기가 상이하였고 이와 맞물려 始行 당시 의례의 성격 등은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하였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각종 외교의례는 단일한 성격의 것으로 수렴되어 갔다. 여기서는 이 사안을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귀결 지점은 고려 군주가 '고려국왕'이자 정동행성 승상의 위상에서 이들 외교의례를 거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외로아문의 의례를 수용한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의례는 몽골(원) 內地의 행성과 달리 단순히 정동행성 차원의 의례로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정동행성과 고려(외국)의 '混一' 차원의 의례로 기능하였을 것이다. 가령 정월 보름 황제를 위한 '祝釐'는 충렬왕이 정동행성 승상을 내세워 여타 행성관과 다름없음을 부각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는 고려 신료들도 참석하고 있었다. 후술할 본명일 예식 사례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듯이, 고려 군주는 정월 보름에 '고려국왕'이자 정동행성 승상으로서 고려 신료들과 행성관을 함께 이끌고 황제를 위한 '祝釐' 예식을 거행하였을 것이다.

배표례는 고려(군주) 차원의 배표례가 始行된 이후 한동안 고려(군주) 차원과 정동행성 차원의 배표례로 구분되어 별개로 운영되었지만, 정동행성이 별도로 사자를 보내 표문을 올리는 일이 소멸하면서 두 배표례는 '混一'되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정동행성 차원의 배표례는 완전히 소멸되었고 고려(군주) 차원의 배표례만이 내세워지는 모습이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제현이 몽골(원)에 머문 공민왕을 대신하여 '權斷征東省事'의 위상에서 배표례를 거행한 사실은[52], 정동행성이 별도로 사자를 보내 표문을 올리는 일은 소멸하였어도, 이와 맞물려 정동행성 차원의 배표례는 소멸하였어도, 이들 일이 고려(군주) 차원에서 사자를 보내 표문을 올리고 이 과정에서 배표례를 행하는 데에 移入・혼합되었을 것임을 단적으로 말해준다.[53]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외로아문의 의례를 수용한 경우와 달리 정동행성

52) 『고려사』 권110 열전23 諸臣 이제현. "時王在元, 國空虛, 齊賢措置得宜, 人賴以安. 嘗於拜表, 陞陛上行禮, 儀衛與王無異, 人譏之."
53) 이상 배표례에 관한 서술은 최종석, 앞의 글, 2019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이 설치도 되기 전에 몽골(원)이 고려를 대상으로 지방 아문의 의례를 적용한 경우에서도, 이들 의례 또한 '고려국왕'이자 정동행성 승상이 거행하는 성격의 것으로 진화하였다. (후기)정동행성이 설치되고 특히 충렬왕의 양위와 충선왕의 즉위 무렵 이후로 한동안 정동행성 승상을 매개로 한 외로아문 의례의 수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를 거치면서 그러한 변화가 구현됐을 것이다.

충렬왕 27년 1월 보름에 고려 군주는 정동행성 승상으로서 여타 행성관과 다름없이 황제를 위한 '祝釐'를 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며칠 뒤인 을축일(聖甲日)을 맞아 충렬왕은 행성관과 고려 신료를 이끌고 妙蓮寺에 행차하여 황제의 만수무강을 비는 예식을 거행하였다.[54] 충렬왕이 행성관 외에도 고려 신료들을 이끌고 본명일 의례를 거행한 데서 엿볼 수 있듯이, 그는 정동행성 승상이자 '고려국왕'인 위상에서 이 의례를 거행하였을 것이다. 정동행성이 설치도 되기 전인 충렬왕 초년에 시작된 본명일 의례는 성갑일을 맞아 법석을 열어 황제를 위해 祝壽를 올리는 예식이었을 것인 데서, 이 의례가 충렬왕 27년 1월에 행성관과 고려 신료가 함께 참석하는 방식으로 변모한 것은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하여 몽골(원) 외로아문의 해당 의례를 수용한 데서였을 것이다.

요하례에서도 동일한 성격 변화가 확인된다. 원 복속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요하례는 정동행성에서 거행되기도 하였다.[55] 구체적으로는 성절 시의 요하례는 정동행성에서 거행되었다. 정조 시에 요하례는 수조하 예식과 병행해야 해서 일반적으로 정전에서 거행되었겠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정동행성에서 치러지기도 하였다.[56] 요하례의 거행 장소가 정전이기도, 정동행성이기도 한 사실은, 고려 군주가 '고려국왕'이자 정동행성 승상의 위상에서 요하례를 거행하였음을 강력히 시사한다.[57] 그리고 고려 군주는 정전에서건 정동행성에서건 고려의 신료들과 행성관을 함께 이끌고 황제를 대상으로 요하

54) 『고려사』 권32 세가32 충렬왕 27년 1월 을축. "王率行省官及群臣, 幸妙蓮寺, 爲帝聖甲日祝壽也."
55) 다음 기사가 기록상으로 행성에서 요하례를 거행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고려사』 권37 세가37 충목왕 원년 1월 병술. "王率百官, 賀正于行省."
56) 최종석, 앞의 글, 2010a, 249-251면.
57) 요하례와 짝을 이루는 배표례의 경우, 정동행성과 고려(군주) 차원에서 각기 표문을 올리는 일이 '混一'되고 나서는 행성관과 고려 신료가 함께 배표례에 참석하였고, 정조를 경하하는 표문의 배표례는 정전에서, 성절의 배표례는 정동행성에서 거행되었을 것이다.

례를 거행하였을 것이다.[58]

이처럼 수렴 지점은 고려 군주가 '고려국왕'이자 정동행성 승상의 위상에서 각종 외교의례를 거행하는 것이었다. 이때 고려 군주는 몽골(원)의 지방 아문의 의례를 활용하면서도 '고려국왕'이자 정동행성 승상의 위상에 걸맞은 방식으로, 달리 말해 '混一'의 면모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몽골(원)의 지방 아문의 의례를 변용하였을 것이다. 이러하였기에 원 복속기에는 여타 시기와 달리 고려가 작성한 별도의 의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별도의 의주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셈이다.

3. 고려말기: 명의 『蕃國儀注』를 활용한 외교의례 운용

『고려사』 예지에 수록된 고려말기 외교의례 의주는 명이 작성한 의례의 의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단순히 참고한 게 아니라 거의 모사하다시피 한 수준이었다. '迎大明無詔勅使儀'를 제외하고 '迎大明詔使儀', '迎大明賜勞使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 '進大明表箋儀'는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迎大明詔使儀', '迎大明賜勞使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 '進大明表箋儀'는 각각 후술할 명이 편찬한 『蕃國儀注』에 수록된 '蕃國接詔儀注', '蕃國受印物儀注',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 '蕃國進賀表箋儀注'의 복제품과도 같은 것으로, 의례의 구성, 절차, 참여자, 집사자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59]

---

58) 영조례도 마찬가지여서 어느 시점 이후로 고려 군주가 사신을 맞이하는 장소는 여전히 교외여도 이전과 달리 조서를 반포하는 의례의 장소는 궁성으로 한정되지 않고 정동행성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에 관해서는 정동훈, 앞의 글, 2015, 124-125면 참조.

59) 『고려사』 예지에 수록된 고려말기 외교의례 의주가 『蕃國儀注』의 것과 완전히 같지는 않다. 의주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고려는 명 측이 작성한 의주를 저본으로 고려말기 외교의례(의주)를 작성하면서, 단순한 수정을 가하거나 사소한 오류를 교정하거나 蕃王을 王으로 바꾸는 식으로 고려를 주체로 할 때 어색한 표현을 수정하거나 일부 구절을 축약하여 기술하거나 같은 내용을 미미하게 다르게 표현하였다.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의주 말미에 "如有朝廷官, 遇正朝冬至聖壽節, 出使在國中者, 常服先行禮, 不在王與衆官行禮之列."이 附記되었다. 이는 고려가 해당 의례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사 당일 명의 사신이 고려(도성)에 머물렀을 예상 가능한 상황을 대비한 지침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은 최종석, 「고려 말기·조선 초기 迎詔儀禮에 관한 새로운 이해 모색—『蕃國儀注』의 소개와 복원」, 『민족문화연구』 제69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5; 앞의 글, 2019 참조. 특히 '迎大明賜勞使儀'

『고려사』 예지에 수록된 고려말기 외교의례 의주의 原書로 작용한『蕃國儀注』란 明이 홍무 3년(1370, 공민왕 19)에 편찬한 인쇄 책자이다. 명은 이전 왕조들과 달리 천자가 예제를 매개로 하여 중국과 蕃國들로 이루어진 천하를 다스리는 새로운 방식의 화이질서를 구현하고자 하였고, 그 일환으로 번국 내에서 명(황제)을 대상으로 거행하는 의례들의 의주까지 직접 작성하였다.[60] 1370년 9월에 편찬된『大明集禮』의 賓禮 내 '蕃國接詔儀注', '蕃國受印物儀注',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 '蕃國進賀表箋儀注'가 이러한 성격의 의주들이다.『蕃國儀注』는『大明集禮』賓禮에 수록된 각종 의주, 總序, 序例 등 가운데 바로 이들 4종의 의주로만 구성된 책자로, 고려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명은 홍무 2년(1369, 공민왕 18) 9월에 작성된 각종 蕃國禮[61]를 보완하여『大明集禮』의 빈례를 완성해 가는 와중에 고려 측이 번국에서 황제를 대상으로 거행해야 하는 의례들의 의주를 반사해 줄 것을 요청하자 해당 의례들의 의주를 뽑아『蕃國儀注』를 작성하고서는 고려에 보냈을 것이다. 이러하였기에『蕃國儀注』에 수록된 의주들은『大明集禮』와 내용 면에서 거의 동일하였다.[62]

에는 여타 의주에서 보이지 않는 성격의 變改가 있었다. 그러한 변개로는 두 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蕃國受印物儀注'와 달리 印綬와 禮物을 받는 게 아니라 인수를 제외하고 禮物만을 받는 예식으로 변개한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迎大明賜勞使儀'를 작성할 당시에 고려는 이미 명으로부터 인장을 받은 상태였고 게다가 이 인장은 傳國璽여서 후대 왕들이 인장을 수여 받을 일은 없었을 것이기에,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印綬를 제외하여 인수와 예물을 받은 예식을 예물을 받는 예식으로 변개한 것이다. 윤승희,「고려 말 명 사신 영접의례의 성립」,『한국중세사연구』제55호, 한국중세사학회, 2018, 582-584면 참조. 다른 하나는 교외에서 사신을 영접한 후 왕궁으로 이동하는 행렬 순서를 기록한 부분에서 '蕃國受印物儀注'와 달리 '次王乘馬行'이라는 구절을 삭제한 점이다. 삭제가 단순 실수에서인지 아니면 어떠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명확하진 않다. 특정 의도에서 이를 삭제할 가능성이 크다고는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일은 고려 군주가 승마를 꺼려서 회피하고자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명의 의주를 저본으로 하지 않고 고려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迎大明無詔勅使儀'에 국왕이 말을 타고 사신을 맞이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고려 군주가 승마를 철저히 기피했다면, 자체적으로 작성한 의주에 고려 군주의 승마 규정을 기재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한편 기우에서 첨언하자면, 이들 변개에도 불구하고 '迎大明賜勞使儀'조차 '蕃國受印物儀注'와 사실상 동일한 의주라는 사실은 부정되지 않는다.

60) 이에 관해서는 岩井茂樹,「明代中國の禮制覇權主義と東アジアの秩序」,『東洋文化』第85號,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2005; 檀上寬,『明代海禁=朝貢システムと華夷秩序』, 京都大學 學術出版會, 2013, 第三部 明代朝貢體制と華夷秩序 참조.

61) 이는『明太祖實錄』卷45 洪武 2년 9월 임자 조에 기재되어 있다.

고려말기 외교의례는 바로 이러한 『蕃國儀注』를 모방·준용한 것이었다. 조선시대 외교의례 또한 마찬가지였다.[63] 그러하기에 고려말기 이래 외교의례에서 고려전기의 외교의례와 이질적이자 단절적인 면모는 명이 작성한 외교의례(의주)를 모방·준용한 데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달리 말해, 고려말기 이래 외교의례가 외교(대외) 무대에 한정하지 않고 국내에서조차 황제 신하의 위상을 구현한다든지, 명·청 지방 관부의 황제를 대상으로 한 의례와 同調한다든지 한 특징 등은 고려말기 이래 외교의례의 '고유한' 것이라기보다는 명이 작성한 외교의례 의주, 정확히는 『蕃國儀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식의 이해는 사실관계에 부합하기는 해도 지극히 피상적이고 沒역사적이다. 당시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 등을 전혀 설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일의 발생 배경과 이유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작업의 일환으로 다음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 왜 명은 유례없이 蕃王이 번국 내에서 명(황제)을 대상으로 거행하는 의례들까지 직접 작성하였을까?
- 왜 고려는 명에게 번국에서 황제를 대상으로 거행해야 하는 의례들의 반사를 요청하였을까?
- 왜 고려는 하사받은 이들 의례를 모사하다시피 하여 외교의례를 작성하였을까?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명의 화이질서가 지닌 역사적 특징을 실마리 삼아 풀어 볼 수 있다. 원·명 혁명 이후 명은 화이질서의 측면에서도 몽골(원)을 계승하고자 하였다. 明代的 화이질서는 유례없이 확장된 원조의 천하질서를 의

62) 이상의 『蕃國儀注』에 관한 소개 내용은 최종석, 앞의 글, 2015; 앞의 글, 2018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63)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외교의례와 같이 조선시대의 것들은 고려말기와 달리 의주의 내용이 훨씬 상세하고 보완적이어서 『蕃國儀注』에 수록된 의주들의 복제품과도 같은 것으로 보긴 어렵다. 하지만 의례절차의 기본 구성뿐만 아니라 각 부분 내 세부 절차마저도 다르지 않아, 大局的으로 보아 조선시대의 외교의례 또한 명이 작성한 외교의례의 모사품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식・계승・전유한 것으로 이적의 세계까지를 포함한 천하에 보편적으로 미쳐야 하는 천자의 천하 지배를 禮制의 차원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질서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질서 아래에서 명조는 현실 세계에서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예제 차원에서 천자를 정점으로 한 無外・一視同仁의 세계를 지향・구현하고자 한 특징을 노정하였다.[64] 일례로 명은 유례없이 피책봉국의 명산대천을 중국 내의 것과 마찬가지로 천하 산천의 일부로 간주하여 致祭 대상에 포함하였고, 이와 맞물려 명 황제는 사신을 보내 피책봉국의 산천에 치제토록 하였다.[65] 곧 예제적으로 천자는 피책봉국을 포함한 천하의 산천에 치제한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명대적 화이질서의 구현은 유례없이 확장된 원조의 천하질서를 의식・계승・전유한 것으로 천자를 정점으로 한 (예적)지배질서가 외교무대라는 울타리를 넘어 번국 내에서도 실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였다. 다만 예제를 매개로 해서 번국 안까지 천자의 천하 지배를 구현하고자 한 일은 武威를 동원해서라도 실현해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지면상에 실현해 놓아야 하는 성질의 것이었다—실질적으로 구현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테지만—.[66] 지면을 넘어선 실현은 번국 측이 번국 안까지 천자의 천하 지배를 구현하는 성격의 예제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데 달려 있었다.

명이 작성한 외교의례(의주)는 명대적 화이질서의 면모를 여느 것 못지않게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명이 작성한 외교의례(의주)의 역사적 성격과 그 연원을 검토하기 위해 『大明集禮』 빈례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64) 宮崎市定, 「洪武から永樂へ—初期明朝政權の性格」, 『東洋史研究』 第27卷 4號, 1969; 岩井茂樹, 앞의 글; David M. Robinson, "The Ming Court and the Legacy of the Yuan Mongols", *Culture, Courtiers, and Competition: The Ming Court (1368-1644)*,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8; 檀上寬, 앞의 책 참조.

65) 원대에는 禮制 차원에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몽골의 관원이 황제의 명을 받고 고려 산천에 치제하러 오곤 하였다. 명대 피책봉국 산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원대의 유산일 공산이 크다. 이에 관해서는 최종석, 「여말선초 명의 예제와 지방 성황제 재편」, 『역사와 현실』 제72호, 한국역사연구회, 2009; 「중화 보편, 딜레마, 창의의 메커니즘—조선 초기 문물제도 정비 성격의 재검토—」, 『조선시대 예교 담론과 예제 질서』, 소명출판, 2016 참조.

66) 예제를 매개로 한 明代的 화이질서 구현이 사실상 지면상의 구현에 만족한 점에 관해서는 최종석, 「鞠躬인가 五拜三叩頭인가?—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을 둘러싼 조선과 명 사신 간의 갈등에 관한 탐색—」, 『한국문화』 제83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b, 234-235면 참조.

『大明集禮』 빈례는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30(賓禮1), 권31(賓禮2), 권32(賓禮3)에는 각각 '蕃王朝貢篇'[67], '蕃使朝貢篇'[68], '遣使篇'[69]이 수록되어 있다. 『大明集禮』 빈례에는 蕃王·蕃使가 명에 朝貢하러 온 시의 의례와 蕃國에 명 사신을 보낸 시의 의례가 실려 있는 것이다.

'蕃王朝貢篇'의 경우, 『大唐開元禮』 권79, 賓禮의 '蕃國主來朝以束帛迎', '勞遣使戒蕃主見日'과 『大唐開元禮』 권80, 賓禮의 '皇帝宴蕃國主'에서 볼 수 있듯이, 前代 禮書에도 '蕃王朝貢'에 해당하는 의례와 그 예식절차가 수록되어 있어, 전대와 구별되는 면모와 특징은 두드러지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蕃王朝貢篇'에는 이전 예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번왕의 入境 후 '迎勞'부터 번왕을 대상으로 한 '勞送出境'까지 시간 순서에 따른 예식의 전반이 각 예식별로 소상하게 기술되어 있고,[70] 관복, 진설 등의 '序例'에 해당하는 항목도 빠짐없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식으로 '蕃王朝貢篇'이 작성된 것은 번왕의 '世一見'이 구현된 것으로 전유된 前代인 元代의 역사 경험을[71] 토대로 해서였을 것이다.

'蕃王朝貢篇'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사실은 여기에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와 '蕃國進賀表箋儀注'가 수록된 점이다. 이들 의례는 역대 중국 왕조의 禮書에 수록된 적이 없는 것이었다. 이들 의례의 수록은 앞서 보았듯이 고려가 몽골(원)의 복속 아래에서 몽골(원)의 지방아문 의례를 활용·변용

67) 『大明集禮』 卷30 빈례1 總序. "(…) 今具其儀, 作蕃王朝貢篇."
68) 『大明集禮』 卷31 빈례2 總序. "(…) 今具其儀, 作蕃使朝貢篇."
69) 『大明集禮』 卷32 빈례3 總序. "(…) 今詳著開詔錫印賜予之儀, 作遣使篇."
70) 『大明集禮』 卷30 빈례1. 今擬國朝蕃王來朝, 先遣應天府官迎勞, 既至館, 復遣省部設宴, 然後習儀, 朝見于奉天殿, 及見皇太子于東宮, 朝見畢, 錫宴以享之, 省府臺皆設席宴饗, 及還, 遣官勞送出境." '蕃王朝貢篇'에 수록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總序→迎勞→冠服→陳設→儀仗→班位→執事→樂舞→贊獻→宴會→賜予→迎勞儀注→朝見儀注→見東宮儀注→見諸王儀注→見宰輔以下儀注→宴會儀注東→宮賜宴儀注→省府臺宴會儀注→陛辭儀注→辭東宮儀注→勞送出境.
71) 『大明集禮』 卷30 賓禮1의 總序 항목에서 殷代 이래 蕃王 조공의 내력을 정리하는 와중에 "世祖至元元年, 勅高麗國王植, 令脩世見之禮. 六月, 植來朝于上都. 其後蕃國來朝, 俟正旦聖節大朝會之日, 而行禮焉."이라고 하여, 명은 몽골이 전통적으로 속국에 부과하는 의무 사항인 '君長親朝'를 고려를 상대로 관철한 일을, 세조 쿠빌라이가 고려에 '世一見'의 예를 행하도록 명령하였고 고려는 이를 좇아 그러한 예를 행하게 된 것으로 전유하였다. 김호동, 『몽골 제국과 고려: 쿠빌라이 정권의 탄생과 고려의 정치적 위상』, 서울대 출판부, 2007, 93-96면; 최종석, 「1356(공민왕 5)-1369년(공민왕 18) 고려-몽골(원) 관계의 성격—'원간섭기'와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제116집, 역사교육연구회, 2010b 참조.

하여 유례없이 요하례와 배표례를 거행한 역사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졌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와 '蕃國進賀表箋儀注'는 '蕃王朝貢'과는 반대 경우로 蕃王이 친히 朝貢하러 오지 못한 상황에서 번국 내에서 황제를 대상으로 망궐례와 배표례를 거행하는 예식이었다. '蕃王朝貢'의 핵심은 번왕의 황제를 대상으로 한 進表・進方物 및 朝見儀에서의 臣禮 거행일 것이기에,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와 '蕃國進賀表箋儀注'를 빈례에 수록해야 한다고 할 때 '蕃王朝貢篇'에 개재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까지는 아니어도 그리 부자연스럽지 않다고는 할 수 있다.[72]

결국, '蕃王朝貢篇'에는 번왕이 직접 조공하러 와 황제에게 臣禮를 행하는 예식과 번왕이 번국 내에 있으면서 황제를 상대로 신례를 행하는 예식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그 편은 번왕이 주체가 되어 황제를 대상으로 臣禮를 거행하는 예식을 수록한 성격의 것인 셈이다.[73]

'遣使篇'은 開詔・錫印・賜予부터 번국에서 이를 맞이하는 것까지를 수록하고 있다.[74] 번국에 파견할 사신에게 조서와 인수 그리고 예물을 전달하는 예식은 부분적으로라도 전대 禮書에서 확인되나, 번국이 조서・인수・예물을 지니고 간 사신을 영접하고 번왕이 조서・인수・예물을 하사받는 예식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곧 '遣使篇'에 '蕃國接詔儀注', '蕃國受印物儀注'와 같은, 번국에서 명 사신을 맞이하는 의주가 수록된 점은 역사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大明集禮』의 빈례에는 번왕이 직접 조공을 하러 오는 경우와 그렇지 못하고 번국 내에서 배표와 요하를 행하는 경우, 번사가 조공을 하러 오는 경우, 명이 번국에 파견할 사신에게 조서, 인수, 예물을 전달하는 경우와

---

72) 다른 편목인 '蕃使朝貢篇'이나 '遣使篇'에 수록하였다면 더욱 부자연스러웠을 것이다.

73) 한편 '蕃使朝貢篇'은 迎勞부터 勞送出境까지의 예식 전반과 관복 등의 '序例'에 해당하는 항목이 기술되어 있어 '蕃王朝貢篇'과 거의 동일한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大明集禮』 卷31 빈례2 참조. '蕃使朝貢篇'에 수록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總序→迎勞→冠服→陳設→儀仗→班位→執事→樂舞→貢獻→錫宴→賜予→迎勞儀注→受蕃國來附遣使進貢儀注→受蕃使每歲常朝儀注→東宮受蕃國來附遣使進貢儀注每歲常朝入見儀附→蕃國遣使來附叅見省府臺官儀蕃國遣使每歲常朝入見儀附→錫宴儀注東宮錫宴儀同→省府臺宴勞儀注→蕃使陛辭儀注→蕃使辭東宮儀注蕃使每歲常朝儀附→勞送出境.

74) '遣使篇'에 수록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總序→詣蕃國開詔書附→賜蕃國印綬→賜吐蕃國禮物→迎接→序坐→蕃國接詔儀注→遣使賜印綬儀注賜禮物儀同→蕃國受印物儀注.

번국이 사신(조서, 인수, 예물)을 맞이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는 의례가 수록되어 있다. 당시 명은 '蕃王朝貢', '蕃使朝貢', '遣使' 편목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식들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번왕이 번국 내에서 행해야 하는 것까지도 수록하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확장된 인식을 지녔던 것이다.

『大明集禮』 빈례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특징적 면모는 명대적 화이질서의 구현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등장하였을 것이다. 특히 명이 원 복속기에 고려가 몽골(원)을 상대로 거행했던 의례를 전유·계승한 데 초점을 맞춰 이 과정을 간략히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몽골(원)은 고려의 출륙 이후 고려를 외국으로 간주하면서도 일부의 지방 아문 의례와 그 예식절차를 고려에 적용하였고, 후기 정동행성의 설치 이후로는 고려(군주)가 주체가 되어 정동행성을 매개로 지방 아문 의례들과 그 예식절차를 확대 수용하였다. 이러한 환경 아래에서 몽골(원)은 지방 아문 의례의 의주와는 별도로, 복속된 외국인 고려를 대상으로 해서는 의주를 작성하지 않았다. 고려 역시 몽골(원) 황제를 대상으로 각종 의례를 거행하면서도 지방 아문 의례들의 의주를 활용·변용하였을 뿐 별도로 의주를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다 원·명 혁명과 뒤이은 명에 대한 사대 이후 상황은 바뀌었다. 명은 몽골(원)과 달리 지방과 번국을 명확히 구분하였고[75] 황제를 대상으로 한 의례의 측면에서도 그러하였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명은 고려를 외로아문과 명확히 구분되는 번국으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명은 전대에 고려에서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각종 외로 아문 의례를 활용·실행한 일을, 번국인 고려가 지방 아문의 의례와 다를 바 없는 각종 외교의례를 거행하고 이와 맞물려 천자의 천하 지배가 번국 내에서도 구현된 것으로 전유·계승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명은 현재의 시각에서 전대의 역사를 전유하고 있었을 것이기에, 몽골(원) 복속 하의 고려가 번국의 위상에서 그러한 의례를 실제로 실행했는지의 문제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앞서

75) 이와 관련하여 정동훈, 앞의 글, 2015 참조.

언급하였듯이, 명은 고려가 속국에 부과하는 몽골의 전통적 의무 사항인 '君長親朝'를 행한 일을 '世一見'의 예를 실행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몽골 등장 이전까지는 중국 밖의 제후국 군주가 중국 황제를 대상으로 망궐례와 배표례를 거행한 바가 없지만,[76] 명은 고려가 몽골(원)을 상대로 망궐례와 배표례를 거행한 사실을 전거로 하여 이들 의례를 번국(제후국)이 황제국을 대상으로 행해야 하는 의례로 당연시하였을 것이다.

이에 명은 전대의 것을 계승·변용하여 지방 아문의 황제를 대상으로 한 의례를 작성하는 것과 별도로, 원대의 각종 지방 아문 의례(및 그 활용·변용의 것)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나름의 변형과 해석을 가해 번국(왕)에서 황제를 대상으로 거행하는 의례의 의주를 직접 작성하였다. 『大明集禮』의 賓禮 내 '蕃國接詔儀注', '蕃國受印物儀注',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 '蕃國進賀表箋儀注'는 그 결실이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작성되었기에 이들 의주는 의례 구성 등의 면에서 지방 아문의 황제를 대상으로 한 의례의 의주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았고,[77] 번왕이 국내에서조차 신하의 위상을 구현한다든지, 번국에서의 의례가 명 지방 관부의 황제를 대상으로 한 의례와 同調한다든지 하는 특징을 지니게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명은 지방 아문의 황제를 대상으로 한 의례(의주)를 마련하는 것 외에도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번왕의 번국 내에서 황제를 대상으로 거행하는 의례(의주)까지 직접 작성하는 것을 통해서, 예제를 매개로 번국 안까지 천자의 천하 지배를 구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면상에서나마 실현해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고려가 명에게 번국에서 황제를 대상으로 거행하는 의례들의 반사를 요청하고, 하사받은 이들 의례를 모사하다시피 하여 외교의례(의주)를

76) 최종석, 앞의 글, 2010a; 앞의 글, 2019. 원 복속기 이전에도 고려 군주가 황제를 상대로 배표례를 거행하는 예가 있곤 했지만, 이러한 사례는 국교 재개 이후 송과의 관계에서처럼 사신 왕래가 제한적이고 비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여건 속에서 비정례적으로 방문한 송 사신 편에 표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배표례는 고려 군주가 황제를 대행한 詔使에게 표문을 건네는 과정에서의 일로, 자신의 신하에게 표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행한 배표례와는 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일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 군주가 자신의 신하에게 표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배표례를 행한 것은 원 복속기 이래로였다.

77) 정동훈, 앞의 글, 2015; 최종석, 앞의 글, 2019 참조.

작성한 이유에 관해서다.

고려가 작성한 '迎大明詔使儀', '迎大明賜勞使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 '進大明表箋儀'는 누차 언급하였듯이『大明集禮』빈례에 수록된 '蕃國接詔儀注', '蕃國受印物儀注',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 '蕃國進賀表箋儀注'가 아니라『蕃國儀注』에 수록된 의주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78] 고려가 이러한『蕃國儀注』를 명으로부터 입수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공민왕 18년(1369) 8월 고려는 명에 사대하게 된 이후 처음으로 명절을 경하하는 사신으로 賀聖節使, 千秋使, 賀正使를 한꺼번에 보내면서 그러한 진하사 편에 '本國朝賀儀注'의 하사를 요청하였다.[79] 고려가 요청한 '本國朝賀儀注'란 고려의 처지에서 불필요한 황제 조정에서의 조하례 의주,『大明集禮』로 치자면 '正旦朝賀儀注'와 '聖節儀注'가[80] 아니라, 本國(고려)에서 명 황제를 대상으로 거행하는 朝賀禮 儀注,『大明集禮』로 치자면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명은 고려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해 6월 '本國朝賀儀注' 한 책을 고려에 하사하였다.[81] 그런데 당시에 본국조하의주, 곧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만이 하사되지는 않은 듯하다. 명은 고려가 요청한 '本國朝賀儀注'만을 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편찬 중이던『大明集禮』의 빈례에서 '本國朝賀儀注'(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를 포함하여 세트라 할 수 있는 동일한 성격—번국에서 명 황제를 대상으로 거행하는 의례—의 4종의 의주를 일괄한『蕃國儀注』를 하사하였을 것이다.[82] 마치 고려가 祭服을 요청하자 명은 군주의 제복과 조복, 왕비 관복, 배신 관복 등 당시 명에서 규정이 존재하였던 관복 전반을 하사한 것

78) 고려말기 당시에『大明集禮』는 고려가 아예 보지도 입수하지도 못한 서책이었다. 김문식, 앞의 글, 2009, 82-83면 참조.

79)『고려사』권41 세가41 공민왕 18년 8월 무진. "遣摠部尙書成准得如京師, 賀聖節, 大將軍金甲雨賀皇太子千秋節, 工部尙書張子溫賀正. 仍請賜本國朝賀儀注."

80)『大明集禮』卷17 嘉禮1 朝會.

81)『고려사』권42 세가42 공민왕 19년 6월 갑술. "張子溫還自京師. 帝賜本國朝賀儀注一冊及金龍紵絲紅熟裏絹各二匹."

82)『고려사』에 명이 '蕃國儀注'가 아니라『본국조하의주』를 하사하였다고 한 까닭은 고려가 당초 본국조하의주를 요청하였고 이 요청에 응하여 명이 '蕃國儀注'를 작성하여 하사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과[83] 유사하게도 말이다. 그러하였기에 고려는 『大明集禮』를 아예 보지도 입수하지도 못했음에도, 『大明集禮』의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본국 조하의주)는 물론이요 '蕃國接詔儀注', '蕃國受印物儀注', '蕃國進賀表箋儀注'까지도 복제한 것과 같은 의주를 작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려가 번국에서 황제를 대상으로 거행하는 의례들을 명에 반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명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식의 의도에서도, 명의 무언의 압력에 밀려서도 아니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고려가 몽골(원)에서 명으로 사대처를 바꾸기 전까지 '本國朝賀儀'를 비롯하여 本國(고려) 내에서 몽골(원) 황제를 대상으로 거행하는 의례를 해 왔으며 명에 사대하게 된 이후 처음으로 명절을 경하하기 위한 사신을 보내면서 이 편에 '本國朝賀儀注'의 하사를 요청한 점이다. 달리 말해, 당시 고려는 사대처가 명으로 바뀐 직후의 상황에서 그동안 몽골(원) 황제를 대상으로 해 온 '本國朝賀儀'를 명 황제를 상대로 해서도 당연히 거행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는 명 측에 그 의주의 하사를 요청한 것이다. 물론 '本國朝賀儀'(요하례)에 한정되는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고려도 명이 전대의 일을 계승・전유하여 번국 내에서 명(황제)을 대상으로 거행하는 의례들까지 직접 작성한 심성(mentality)과 마찬가지로, 전대에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각종 외로 아문 의례를 활용・변용해 온 일을 번국(제후국)이 행해야 하는 외교의례의 실천으로 전유하고 있었을 것이다.[84]

---

83) 김윤정, 「고려후기 '賜與冠服'의 재개와 문화사적 의미」, 한국역사연구회 중세1분과 발표문, 2018년, 8-9면.

84) 관련 기록이 극히 부족한 탓에 명에 사대한 이후로도 고려가 의식세계의 측면에서 전대의 외교의례 관행을 승습한 까닭을 명확히 해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원 복속기를 분기점으로 한 華夷 의식 변화와 그 지속은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원 복속기에는 화이 의식을 원안대로 수용하여 스스로를 종족과 공간의 측면에서 이적으로 간주하면서도 여타 이적들과 달리 보편적 성격의 중화 문명(문화)을 추구・향유한다는 의식('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이 의식')이 대두하였고, 이 의식은 이후로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화이 의식하에서 고려는 자신을 중국 밖의 외국(이적 세계)이면서도 '보통의 오랑캐(常夷)'와는 달리 중화문명(문화)을 추구・구현한 곳으로 보아 천자를 정점으로 한 천하질서를 수용・긍정시하면서 동시에 천하질서 내에서 자신의 위상인 이적 세계(중국 밖 외국)의 제후(국)를 망각하지 않고 그 본분을 다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명에 사대한 직후에 먼저 고려가 전대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황제를 대상으로 한 외교의례를 거행하고자 한 심산에서 명 측에 해당 의례의 의주를 요청한 것은 이러한 의식 세계에서 촉발되었을 것이다. 원 복속기를 분기점으로 한 화이 의식 변화에 관해서는 최종석, 「고려 후기 '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이 의식'의 탄생과 내향화—조선

당시 고려가 당면한 문제는 전대에 황제를 대상으로 거행한 각종 의례와 그 방식을 지속할지 여부가 아니라, 지속을 전제로 하면서도 어떠한 의주에 근거해서 이들 의례를 거행해야 하는지였을 것이다. 이와 맞물려 고려가 명 측에 그러한 의례의 의주를 요청하는 행보는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고까지 할 수 있다. 설령 고려가 전대처럼 지방아문 의례(의주)를 활용・변용하고자 한다 해도 명 지방아문 의례(의주)의 입수는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고려는 명에 보내는 진하사 편에 다가올 명 황제 명절에 거행해야 하는 요하례의 의주를 요청하였을 것이다. 명 측은 때마침 고려가 원하고 요구하는 의주들, 즉 蕃王이 번국 내에서 명(황제)을 대상으로 거행하는 의례들을 작성하고 있었기에[85] 이들 의주를 일괄하여 책자 형태로 만들어 고려에 하사하였을 것이다. 이로 인해 고려는 어떠한 의주에 근거해서 전대에서와 같은 외교의례를 거행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86]

고려는 하사받은 이들 의주를 토대로 '迎大明詔使儀', '迎大明賜勞使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 '進大明表箋儀'라는 황제국을 상대로 한 '제후(국) 의례'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蕃國儀注』를 토대로 작성된 '迎大明詔使儀', '迎大明賜勞使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 '進大明表箋儀'는 각각 그 저본인 '蕃國接詔儀注', '蕃國受印物儀注',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 '蕃國進賀表箋儀注'를 대체하고자 마련된 것이 아니었다. 이 점은 『蕃國儀注』를 토대로 고려말기 외교의례의 의주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축약이 이루어진 데서 엿볼 수 있다. 고려는 '迎大明詔使儀', '迎大明賜勞使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 '進大明表箋儀'를 작성한 이후로도 이것과 『蕃國儀注』에 수록된 의주를 함께 사용하였을 것이다.[87] 구체적으로는 『蕃國儀注』를 위주로 하면서도 고려 관원이 사용하기

적 자기정체성의 모태를 찾아서」, 『민족문화연구』 제74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참조.

85) 이러한 양국 사이의 共鳴은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는 전대에 고려(군주)가 몽골(원) 외로아문의 의례를 활용하여 각종 외교의례를 거행한 역사 현실을 양국이 공히 유교적 원리주의로 전유하여 계승한 데서 발현되었을 것이다.

86) 만약 고려가 명의 지방아문 의례(의주)를 받았다면 원 복속기처럼 이를 참고로 해서 외교의례를 운용하였을 것이다. 혹은 별다른 의주를 받지 못했다면, 원 복속기의 관행을 감안하면서 외교의례를 운영하였을 것이다. 두 경우 모두 고려가 관련 의주를 작성했을 수도 의주 작성 없이 관례대로 행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에 유용한 버전이라 할 수 있는 『고려사』에 수록된 고려말기 외교의례 의주를[88] 병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고려는 '迎大明詔使儀', '迎大明賜勞使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 '進大明表箋儀'의 작성에 더해 명이 하사한 의주를 저본으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의주인 '迎大明無詔勅使儀'—명이 보낸 咨文 등의 公牒을 지니고 온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와 그 의주—를 갖추었다. 명 사신을 통해 전달된 咨文 등의 公牒은 원 복속기 이래로의 관문서식 외교문서인 데서,[89] 咨文 등의 公牒을 지니고 온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 또한 원 복속기 이래로의 일이었을 것이다. 명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예식은 거행되어야 했기에, 고려는 어떠한 의식절차를 통해 이러한 사신을 맞이해야 하는지를 정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명이 咨文 등의 公牒을 지니고 온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의 의주는 내려주지 않았기에—정확히는 명은 번국(번왕)이 咨文 등의 公牒을 지니고 온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의 의주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 고려는 자체적으로 의주를 작성해야 했을 것이고, 이에 '迎大明無詔勅使儀'를 마련한 것이다. 이 의주의 작성 또한 고려말기의 여타 외교의례와 마찬가지로 전대의 관행을 전유·계승한 차원의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90]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외교의례가 원 복속기를 경과하면서 그 이전과 이질적이자 단절적인 것으로 변모하였고 고려말기의 외교의례는 원 복속기의 것을 轉有·계승

87) 최종석, 앞의 글, 2015 참조.

88) 『고려사』에 수록된 고려말기 외교의례 의주는 이러한 성격의 것이었기에, 『고려사』 예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의 말미에는 "如有朝廷官, 遇正朝冬至聖壽節, 出使在國中者, 常服先行禮, 不在王與衆官行禮之列."라는, 고려 입장에서 의례의 운영 시에 참작할 점이 附記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고려사』에 수록된 고려말기 외교의례 의주의 작성 목적과 활용 방식에 관해서는 현재 준비 중인 별고에서 상세히 검토하려 한다.

89) 이에 관해서는 森平雅彦, 「牒と咨のあいだ: 高麗王と元中書省の往復文書」, 『史淵』 第144輯, 九州大學大學院人文科學研究院, 2007; 정동훈, 「高麗-明 外交文書 書式의 성립과 배경」, 『한국사론』 제56권, 국사편찬위원회, 2010 참조.

90) '迎大明無詔勅使儀'에 관해서는 별고에서 상술토록 하겠다.

하여 성립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원 복속기 이래 외교의례의 특징은 외교(대외) 무대에 한정된 고려전기와 달리 국내에서조차 황제 신하의 위상을 구현한다든지, 황제국 지방 관부의 황제를 대상으로 한 의례와 별개로 운영된 전대와 달리 이와 同調한다든지 하는 사실을 핵심으로 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규명·부각하였고 더 나아가 이러한 특징의 성립 동인을 검토하였다.

이하에서는 영조례(의주)와 배표례(의주)의 변화 과정을 위주로 하여, 원 복속기를 분기점으로 한 외교의례 전환과 그 맥락을 규명한 본고의 검토 작업을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몽골 등장 이전에는 황제국의 지방 아문에서 황제가 파견한 詔使(詔書)를 맞이하는 의례(가령 금의 '外路迎拜赦詔')와 고려에서 北朝인 요·금의 詔使(詔書)를 맞이하는 의례인 '迎北朝詔使儀'가 서로 이질적이고도 별개로 운용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고려는 황제국 지방 아문의 의례와 이질적이며 자체 제작한 '迎北朝詔使儀'에 의거해서 영조례를 거행하였다.

고려전기의 외교의례는 황제의 조서와 칙서 등을 지니고 온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가 전부였고 고려 군주가 외교(대외) 현장에서 황제 제후(신하)의 위상을 구현하는 성격의 것인 까닭에, 고려 군주가 표문을 작성하여 자국의 사신에게 건네는 과정에서 행하는 臣禮(拜表禮)와 같은, 외교(대외) 무대에 한정되지 않고 국내에서조차 신하의 위상을 구현하는 성격의 의례는 거행되지 않았다. 당시 고려 군주는 작성된 표문을 황제국에 파견되는 자신의 신하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배표례 없이 건넸다.

•원 복속기에 들어서 외교의례는 전면적으로 전환되었다. 개별 외교의례에 따라 변화 발생의 계기는 다소 다르지만 크게 두 갈래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정동행성이 설치도 되기 전에 몽골(원)이 복속된 '외국'인 고려를 대상으로 일부의 지방 아문 의례를 적용한 것이다. 영조례 사례는 이에 해당하였다. 몽골(원)은 금의 '外路迎拜赦詔'를 계승한 '外路迎拜詔赦'를 마련하였고 이를 복속된 외국인 고려에까지 적용하였다. 이로 인해 고려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迎北朝詔使儀'는 이와 이질적인, 금의 '外路迎拜赦詔'를 계승한 몽골(원)의 '外路迎拜詔赦'로 대체되었다. 다른 하나는 후기 정동행성의 설치 이후로 충렬왕이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하여 아직 도입되지 않은 외로아문 의례를 수용한 것이다. 배표례 사례가 그러하였다. 고려 군주가 몽골(원) 지방 관부의 장관인 정동행성 승상이기도 한 여건에서, 충렬왕은 무언가의 의도에서 정동행성 승상을 부각해야 했고 이와 맞물려 몽골(원) 외로아문 의례의 수용·활용 차원에서 배표례를 시행하였을 것이다.

•외교의례 변화의 계기는 상이했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영조례와 배표례를 포함하여 원 복속기의 외교의례는 고려 군주가 '고려국왕'이자 정동행성 승상의 위상에서 몽골(원)의 지방 아문의 의례를 활용하면서도 그러한 위상에 걸맞게 변용하는 방향으로 수렴된 채 거행되었다. 이와 맞물려 당시에는 여타 시기와 달리 고려가 작성한 별도의 의주는 존재하지 않았다. 고려는 별도의 의주 작성 없이 몽골(원) 외로아문 의례를 활용・변용하면서 각종 외교의례를 거행하였다.

•명은 유례없이 확장된 원조의 천하질서를 의식・계승・전유하여 현실 세계에서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예제 차원에서 천자를 정점으로 한 無外・一視同仁의 세계를 지향・구현하고자 하였고, 이와 맞물려 이전 왕조들과 달리 번국 내에서 명(황제)을 대상으로 거행하는 의례들의 의주까지 직접 작성하였다. 1370년 9월에 편찬된 『大明集禮』의 賓禮 내 '蕃國接詔儀注', '蕃國受印物儀注',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 '蕃國進賀表箋儀注'가 이러한 성격의 의주들로, 이 가운데 '蕃國接詔儀注'와 '蕃國進賀表箋儀注'는 각각 번국 내에서 명 황제를 대상으로 거행하는 영조례와 배표례의 의주에 해당한다.

또한 명이 번국 내에서 명(황제)을 대상으로 거행하는 의례들의 의주까지 직접 작성한 데에는 전대에 고려에서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각종 외로 아문 의례를 활용・실행한 일을, 번국인 고려가 지방 아문의 의례와 다를 바 없는 각종 외교의례를 거행하고 이와 맞물려 천자의 천하 지배가 번국 내에서도 구현된 것으로 전유・계승한 인식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고려도 명이 전대의 일을 계승・전유하여 번국 내에서 명(황제)을 대상으로 거행하는 의례들까지 직접 작성한 심성과 마찬가지로, 전대에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각종 외로 아문 의례를 활용・변용해 온 일을 번국(제후국)이 행해야 하는 외교의례의 실천으로 전유하였을 것이다. 이에 당시 고려의 당면과제는 전대에 황제를 대상으로 거행한 각종 의례와 그 방식의 지속을 전제로 하면서도 어떠한 의주에 근거해서 이들 의례를 거행해야 하는지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고려는 명에 보내는 진하사 편에 다가올 명 황제 명절에 거행해야 하는 요하례의 의주(本國朝賀儀注)를 요청하였다.

•명 측은 때마침 고려가 원하고 요구하는 의주들, 즉 蕃王이 번국 내에서 명(황제)을 대상으로 거행하는 의례들을 작성하고 있었기에 이들 의주를 일괄하여 책자 형태로 만들어 고려에 하사하였을 것이다. 곧 명은 『蕃國儀注』를 하사한 것이다. 이 책에는 번국 내에서 명 황제를 대상으로 거행하는 영조례와 배표례의 의주인 '蕃國接詔儀注'와 '蕃國進賀表箋儀注'가 수록되어 있었다.

•고려는 명이 하사한 『蕃國儀注』의 수록 의주들을 토대로 그것의 복제품과도 같은 '迎大明詔使儀', '迎大明賜勞使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 '進大明表箋儀'를 작성하였다. 또한 고려는 여기에 더해 명이 하사한 의주를 저본으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의주인 '迎大明無詔勅使儀'一명이 보낸 咨文 등의 公牒을 지니고 온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와 그 의주—를 제작하였다. 이 의주의 작성 또한 고려말기의 여타 외교의례와 마찬가지로 전대의 관행을 전유・계승한 차원의 일이었다.

•그 결과 원 복속기는 물론이요 고려말기의 외교의례도 외교(대외) 무대에 한정된 고려전기와 달리 국내에서조차 황제 신하의 위상을 구현한다든지, 황제국 지방 관부의 황제를 대상으로 한 의례와 별개로 운영된 전대와 달리 이와 同調한다든지 하는 특징을 노정하게 되었다.

'迎大明詔使儀', '進大明表箋儀'를 포함한 고려말기의 외교의례와 그 의주는 그 이후로도 이어져 사실상 대한제국 성립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고려말기의 외교의례는 원 복속기를 전유・계승한 데서, 원 복속기 이래 외교의례는 대한제국 성립 이전까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 복속기 이래 외교의례는 전형적인 조공 책봉 관계를 구성하는 전형적인 외교의례로 간주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는 데서, 본고는 '전형'・'전통'과 몽골 시대 遺制의 예상치 못한 인연을 보여주고 있다.

▮ 참고문헌

김문식,「조선시대 國家典禮書의 편찬 양상」,『장서각』제21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79-104면.
김성규,「고려 외교에서 의례(儀禮)와 국왕의 자세」,『역사와 현실』제94호, 한국역사연구회, 2014, 363-394면.
김지영,「18세기 후반 國家典禮의 정비와『春官通考』」,『韓國學報』제114집, 일지사, 2004, 95-131면.
김호동,『몽골 제국과 고려: 쿠빌라이 정권의 탄생과 고려의 정치적 위상』, 서울대 출판부, 2007.
송지원,「영조대 儀禮 정비와『國朝續五禮儀』편찬」,『한국문화』제50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201-228면.
_____,「정조대 의례 정비와『春官通考』편찬」,『규장각』제38집,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97-152면.
윤승희,「고려 말 명 사신 영접의례의 성립」,『한국중세사연구』제55호, 한국중세사학회, 2018, 571-599면.
이명미,『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 혜안, 2016.
장동익,「征東行省의 硏究」,『동방학지』제67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0, 1-85면.
전해종,『韓中關係史硏究』, 일조각, 1970
정동훈,「高麗-明 外交文書 書式의 성립과 배경」,『한국사론』제56권, 국사편찬위원회, 2010, 139-207면.
_____,「고려시대 사신 영접 의례의 변동과 국가 위상」,『역사와 현실』제98호, 한국역사연구회, 2015, 103-140면.
최종석,「여말선초 명의 예제와 지방 성황제 재편」,『역사와 현실』제72호, 한국역사연구회, 2009, 207-251면.
_____,「고려시대 朝賀儀 의례 구조의 변동과 국가 위상」,『한국문화』제51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a, 223-264면.
_____,「1356(공민왕 5)-1369년(공민왕 18) 고려-몽골(원) 관계의 성격—'원간섭기'와의 연속성을 중심으로—」,『역사교육』제116집, 역사교육연구회, 2010b, 233-271면.
_____,「고려 말기·조선 초기 迎詔儀禮에 관한 새로운 이해 모색—『蕃國儀注』의 소개와 복원」,『민족문화연구』제69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5, 269-309면.
_____,「중화 보편, 딜레마, 창의의 메커니즘—조선 초기 문물제도 정비 성격의 재검토—」,『조선시대 예교 담론과 예제 질서』, 소명출판, 2016.
_____,「고려 후기 '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이 의식'의 탄생과 내향화—조선적 자기정체성의 모태를 찾아서」,『민족문화연구』제74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161-220면.
_____,「조선초기 迎詔禮 운영과『蕃國儀注』」,『역사와 담론』제86집, 호서사학회, 2018a, 139-177면.
_____,「鞠躬인가 五拜三叩頭인가?—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을 둘러싼 조선과 명 사신 간의 갈등에 관한 탐색—」,『한국문화』제83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b, 227-263면.
_____,「고려후기 拜表禮의 창출·존속과 몽골 임팩트」,『한국문화』제86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9, 155-196면.

宮崎市定,「洪武から永樂へ—初期明朝政權の性格」,『東洋史研究』第27卷 4號, 東洋史研究会, 1969, 363-385面.
檀上寬,『明代海禁=朝貢システムと華夷秩序』, 京都大學 學術出版會, 2013.
北村秀人,「高麗に於ける征東行省について」,『朝鮮學報』第32輯, 朝鮮学会, 1964, 1-73面.
森平雅彦,「牒と咨のあいだ: 高麗王と元中書省の往復文書」,『史淵』第144輯, 九州大学 大学院人文科学研究院, 2007, 93-137面.
舩田善之,「元代の命令文書の開讀について」,『東洋史研究』第63卷 4號, 東洋史研究会, 2005, 650-681面.
岩井茂樹,「明代中國の禮制覇權主義と東アジアの秩序」,『東洋文化』第85號, 東京大学 東洋文化研究所, 2005, 121-160面.

David M. Robinson, "The Ming Court and the Legacy of the Yuan Mongols", *Culture, Courtiers, and Competition: The Ming Court (1368-1644)*,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8.

【Abstract】

The Creation of 'typical' diplomatic ritual in the late Koryo dynasty and Mongol impact

Choi, Jong-Suk*

In this paper, it was confirmed that the diplomatic rituals of the Koryo period were greatly transformed during the Mongolian domination and the diplomatic protocols in the late Koryo dynasty were established by inheriting and appropriating diplomatic rituals in the Mongolian domination period.

The diplomatic rituals were entirely changed during the Mongolian domination period. There were two types of changes in diplomatic ritual. One is that Mongol (Yuan) applied some local government rituals toward emperor to the Koryo dynasty even before the establishment of Chungdonghangsung (征東行省). The other is that Koryo monarch Chungyul (忠烈王) as chief officer of Chungdonghangsung after the establishment of Chungdonghangsung accepted local government rituals toward emperor, which has yet to be introduced.

The Ming Dynasty succeeded to legacy of the Yuan Dynasty and therefore wrote rituals which tributary states (蕃國) would perform toward the Ming emperor within tributary states. The Koryo dynasty also inherited experiences that the Koryo dynasty had used local government rituals toward emperor during the Mongolian domination period, and therefore interpreted the experiences in his own way.

The Koryo dynasty needed rituals to perform toward the Ming emperor within tributary states, and then asked for that kinds of diplomatic protocol, which had been prepared by the Ming Dynasty. The Ming Dynasty positively responded to the request of the Koryo dynasty. The Ming Dynasty arranged the diplomatic protocols in a booklet form and handed over *Beon'guk Euiju (蕃國儀注)* to the Koryo dynasty. Based on the diplomatic protocols containing in *Beon'guk Euiju*, the Koryo dynasty drew up diplomatic protocols like an imitation way. These diplomatic protocols made at the end of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Korean History, Dongduk Women's Univ.

the Koryo Dynasty actually continued until the end of the Chosun Dynasty.

Keywords: Diplomatic ritual, *Beon'guk Euiju (蕃國儀注)*, Chungdonghangsung (征東行省), Koryo, Mongol (Yuan).

접수일: 2019.09.30. ‖ 심사일: 2019.10.08. ‖ 게재확정일: 2019.11.01.